

군사시설의 합리적인 관리 및 주민지원 대책

- 외국의 주요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-

-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보상대책이 미흡
 -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은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, 광범위한 통제·규제지역 설치로 인한 정주생활환경의 낙후, 지역발전의 장애 등 초래
- 외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대책 및 제도적 장치로 민원을 최소화
 - 일본 :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와 군사시설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제도를 운용
 - 미국 : 군사시설의 통합 이용 및 조정 정책을 추진하고, 종합적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
 - 독일 : 군사시설의 영향범위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, 해당토지는 국가가 매수하여 민원을 최소화
 - 프랑스 : 군사시설 주변의 행위규제 최소화 및 관련사항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
- 정책적 시사점
 - 군사시설 이전과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및 보상제도의 마련
 - 군사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·평가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문기구 설치
 -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체계의 일원화

1. 우리나라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의 운영실태

- 사유재산권의 제한
 -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 이내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 해당지역의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
-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치로 지역발전 저해
 - 개별군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치(1km)하여 건물의 신·증축을 제약하는 등 정상적인 지역발전 저해
- 광범위한 통제·규제지역설치로 정주생활환경의 낙후
 -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 지역에 대해 민간인통제선을 설치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크게 제약
- 피해보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흡
 -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성 확보에 치중하여 군사작전과 훈련으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조항이 누락되어 민원이 다량 발생
 -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치지역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및 보상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민원이 증가

2. 외국의 군사시설 관련 주요현안 및 관리실태

- 일본 : 기지확산 반대, 민유지 및 현유지의 계약거부와 반환요구, 기지용지의 해제 및 지역개발지원 요구, 기지에 의한 소음 및 폭음 제거와 배상요구
 - 도심지 소재 기지의 통합과 교외이전, 농민에게 해당토지 반환, 도시주민에 대해서는 국유지로 반환하고 피해보상 실시
- 미국 : '80년대 후반 들어 안보·경제상황의 급변으로 군사기지 및 시설의 과잉상태가 심화
 - 1988년 행정부와 의회의 독립기구인 기지정비 및 폐쇄 위원회(Base Realignment and Closure Committee)를 설치하고, 군 구조 및 국방예산에 부응한 기지 이전 및

폐쇄·조정 작업 추진

- 기지정비사업은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지만, 지방정부도 기지 이전 및 폐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반대로 특정기지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토록 함
- 독일 : 통일 전 독일(서독)은 협소한 국토 내에 자국군 및 외국군이 사용할 군용지의 확보 및 유지가 관건
 - 통독 후 미군기지 및 독일군의 재배치, 군사시설의 통합이용 등으로 군사시설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기준 및 이용방안에 대한 각종 정책 수립을 활발히 추진
 - 2차 대전 이후 변경지역으로 전락한 접경지역의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해 1971년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여 지원
- 프랑스 : 군사시설 입지에 따른 규제를 토지이용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
 - 군사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 등의 규제사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, 민원발생시 군·지자체·주민대표가 협의하여 처리
- 스위스 : 군사시설의 민간이용이 활발하며 군사시설 입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므로 문제가 거의 없으나, 항공기지의 소음발생은 여전히 문제로 대두
 - 군사시설 설치에 따른 자료가 공개되고 이를 각종 계획에 미리 반영할 수 있어, 지방정부의 토지이용계획이나 주민생활 불편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
- 터키 : 시가지 내 군사시설 중 작전시설은 외곽으로 이전하고 교육시설, 군인복지시설, 치안시설 등 비작전시설만 입지
 - 군사시설 이전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, 접경지역의 통제지역은 국가가 토지를 매수하여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점 없음
 - 군사시설보호에 필요한 범위까지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사유지는 보상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며 집단민원 발생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

3. 정책적 시사점

- 국가차원의 지원 및 보상제도 마련
 - 군사시설이 집중 배치되어 있거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지급
 - 군사작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
 - 개별군사시설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국가 매입
-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로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일원화 및 전문기구설치
 -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업무는 합동참모본부 군사시설보호과, 개별군사시설의 정비 및 이전에 관한 업무는 국방부 군사시설국으로 이원화
 - 따라서, 업무협조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
 - 군사시설 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국방부 내 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이 필요함
- 민·관·군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
 -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및 도심 내 군사시설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조정업무를 추진
 - 군사시설 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
-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비 및 강화
 - 접경지역지원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서 제정
 -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, 군사시설보호법은 접경지역지원법에 우선하므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의 시행에 한계가 있음
 - 따라서, 접경지역 내에 지정되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수도권정비계획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

한국과 주요 외국의 군사시설보호 관련제도 비교

구 분	한 국	일 본	프랑스
군사시설보호 관련법	· 군사시설보호법 · 군용항공기지법 · 해군기지법	· 비행장및항공보안시설의 설치및관리에관한훈령 · 방위청의자위대시설취득 에관한훈령 · 기지사령및기지업무에관 한훈령 · 훈련시제한수역의설정및 손실보상에관한훈령	—
군사시설 부지획득	· 군사시설보호법 · 토지수용법	· 토지수용법	· 도시계획법 · 수용법
보호구역	설정	· 항공 및 통신기지 주변에 전파장해구역 설정	—
보호구역 범위	· 군사시설 경계선에서 1km까지	· 전파장해범위	· 시설보호 위주
보호구역 인접 지역 행위규제	· 건축물 신·증축 및 고도제한	· 토지매매, 건축물 증·개축, 신규 전기배선 설치	· 시설별로 영향 정도에 따라 규제 ·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세부 사항 명시
보호구역의 토지소유 형태	· 군사시설부지는 국방부 소유로 수용 · 경계선 밖은 국·공유지 및 사유지 혼재	· 국가소유 : 전파장해구역 토지 매수 및 보상	· 국가소유 : 시설/부지
군사시설 이전 비용 조달	· 작전상 필요시 국가 지원 · 기타의 경우에는 부대별 독립채산제 및 지방정부비용 요구	국가지원	· 원칙적으로 국가 지원
민원처리제도	· 지자체 및 이해당사자가 국방부에 개별적으로 제기	· 방위시설주변의정비관련 사무의수속에관한훈령 · 방위시설주변생활환경의 정비등에관한법률	· 군·지자체·주민대 표가 협의하여 처리
접경지역 민통선 설치	· 15km까지 ※ 국가 수용 안함	없음	없음

구 분	독 일	스위스	터 키
군사시설보호 관련법	· 군사시설보호구역법	· 부대시설보호법 · 군법	· 군사시설보호법 · 군용기지보호법
군사시설 부지획득	· 토지수용법	· 수용법	· 수용법
보호구역	설정	설정	설정
보호구역 범위	경계선 내	경계선 내	경계선 내
보호구역 인접 지역 행위규제	· 시설별로 세분하여 규제 · 경계선 내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수용	· 군사시설을 국가기간 시설로 관리 · 모든 시설이 지하화되어 마찰의 소지가 거의 없음	· 경계선 밖의 건물 신·증축시 직접적인 공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허가제도 시행
보호구역의 토지소유 형태	국가소유	국가소유	국가소유
군사시설 이전 비용 조달	· 원칙적으로 국가 지원	· 원칙적으로 국가 지원	· 원칙적으로 국가 지원
민원처리제도	· 군·지자체·주민대표 가 협의하여 처리	· 군·지자체·주민대표가 협의하여 처리	· 군·지자체·주민대표 가 협의하여 처리
접경지역 민통선 설치	없음	없음	· 이란·이라크 국경 1~5km ※ 국가가 수용

국토연구원 김영봉 연구위원 (ybkim@krihs.re.kr, 031-380-0151)